
생활보장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

- 질병, 장애, 저소득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,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2.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

-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자녀 교통비를 지원하여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겨울을 힘들게 지내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3.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료복지 구현

-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발생하는 질병·부상·출산 등 각종 의료 문제에 대해 신속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-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와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의 유도 및 자발적 건강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4. 복지대상자 급여 적정 관리

- 복지 대상자의 소득·재산 등 변동 사항을 확인·반영하여 적절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5. 자활기반 마련

-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 자활·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6. 서비스별 접수·문의창구

서 비 스 명	담 당	전 화 번 호	팩 스 (FAX)
노숙인시설, 의료급여 업무	기초생활보장담당	220-5571~6	220-5509
국민기초수급자 관리, 차상위계층 관리	통합관리담당	220-5580~8 220-5550~8	
저소득주민자활	자활지원담당	220-5681~6	

7.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셔야 할 사항

- 복지 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 소득이나 재산, 부양가족 등 변동 사항이 생기시는 분들은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생활보장과로 연락하여,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작은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